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희승 · 안호영  
임미애 · 이원택 · 이성운  
이정문 · 서영교 · 양문석  
박민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 · 대량실업 · 남북관계의 변화 ·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,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, 전체 예산의 10%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 · 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.

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,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, 대형 세수 결손이

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·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%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%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%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).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4.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%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5.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%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%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